

## 세종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서 (예시)

(국내운영기관명)과/와 (현지운영기관명)은/는(이하 '양 기관'으로 약칭한다)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을 통한 양 국가의 문화적 교류와 상호 유대관계 강화를 위하여 (국가+지역명)에 '세종학당'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제 1조 (목적) 본 협약은 세종학당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양 기관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'세종학당'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 (기본 방향) 양 기관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사업인 세종학당재단의 '세종학당' 사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세종학당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성실히 협력하며, 세종학당 운영을 통해 지역 내 한국어·한국 문화 보급 기관으로서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고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 3조 (협약 내용) 본 협약에서 각 기관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.

### (현지운영기관명)

- ① 교육, 사무 및 기타 시설 등 교육운영을 위한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고 관리 및 보호한다.
- ② 세종학당 홍보, 학습자 모집 및 등록, 기타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시스템을 지원한다.
- ③ 세종학당 교원(또는 파견 교원) 및 운영 요원에 대한 비자 취득 등 세종학당 운영과 관련된 ooo(국가) 내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.
- ④ 세종학당재단(이하 '재단'이라 한다)의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에 따라 세종학당 운영 예산에 대하여 투명하게 집행 처리하며 (국내운영기관명)(으)로 집행 현황을 월 1회 회계 및 사업보고를 하며, 연 1회 1년 간 회계 및 사업보고를 한다.

### (국내운영기관명)

- ① 재단에서 교부하는 세종학당 운영 예산을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에 따라 총괄 관리 및 집행하고 정산하여 매년 재단으로 그 결과를 제출한다.
- ② 세종학당의 운영을 책임기관으로서 총괄 관리·감독하며 한국 내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
- ③ 한국어 교사 파견, 한국어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 현지 교육 운영을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세종학당 운영을 위한 교육 자료, 운영비,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 4조 (강의 및 수업료 징수, 분배) ① 세종학당에서 강의 수업료 징수 및 수익금 처리는 재단의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에 따라 정한다.

제 5조 (유효기간) ① 본 협약은 당사자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세종학당 지정 확정일로부터 이후 3년이며, 3년 동안 협약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3년 연장된다.

제 6조 (법적 책임) ① 본 협약에 제시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협약 당사자는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한다.

② 협약에서 제시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협약 당사자 서로에게 주어진다.

제 7조 (불가항력) 국가 돌발사건, 전쟁, 정부의 금지령 또는 기타 본 협약의 규제 범위를 초과하여 협약 당사자가 계속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, 협약 당사자는 반드시 협약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항목의 연장 또는 취소를 해야 하며 협약 상대방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.

제 8조 (지적소유권) ① 세종학당 관련 표지 및 휘장의 지적 소유권은 재단이 단독으로 소유한다. 본 협약 종결 후 양 기관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세종학당 관련 표지 및 휘장을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
②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, 쌍방 협의를 통해서 지적소유권을 결정한다. 지적소유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, 우호 협상의 기초 하에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.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국제관례에 따라서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 결정한다.

제 9조 (기타 사항)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재단에 그 내용을 알린다.

제 10조 (협약 언어) 협약서는 한국어와 (현지어)(으)로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, 두 언어의 협약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.

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(국내운영기관)  
기관장  
(서명)

(현지운영기관)  
기관장  
(서명)